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8 / 전송(02)790-8911
상대가치기획센터 국장 김기성(6574) / 팀장 김선우(6576) / 주임 최승일(6578) / email: csimal1022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9251호

시행일자 2017. 12. 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1호(2017.12.05)"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"관련입니다.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의료법」 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208호, 2017.11.23.)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합니다.

- 주요 내용 -

- 가. 별표1에 제688호부터 제691호까지를 신설함(동공검사, 타액선 도관 세정술,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, 항 PLA2R IgG 항체검사[정밀면역검사][면역형광법])
- 나. 별표2에 제6호를 신설함(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)

붙 임 : 1. 개정고시 1부.
2. 고시 전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각과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